

# 법률사무종사 가이드라인

Ministry of Justice · Republic of Korea | 2021. 12



# 법률사무종사 가이드라인

## CONTENTS

1. 개요	04
2. 법률사무종사기관 현황	05
3. 법률사무종사 제도 근거 법률	06
4. 법률사무종사 변호사가 알아야 할 내용	07
5. 법률사무종사기관이 알아야 할 내용	18
<b>별첨</b>	
별첨1 법률사무종사 확인서 양식	33
별첨2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신청서 양식	34
별첨3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서 양식	39
별첨4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양식	40
별첨5 실무수습 변호사 표준 근로계약서	41
별첨6 실무수습 변호사 지도 및 처우 가이드	44
별첨7 올바른 법률사무종사제도 정착을 위한 안내문	50
별첨8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취소 신청서 양식	52

1

개요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 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법률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될 수 없고, 사건을 수임하거나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제31조의2 제1항).
- 위와 같은 법률사무종사 제도는 “21세기 시대상황에 맞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변호사법 법률 제10627호, 2011. 5. 17. 일부개정).
  - ※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이 ①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② 법률사무종사기관 취업자와 미취업자, 사법연수생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를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13. 10. 24., 2012헌마480 전원 재판부 결정).
- 한편, 법무부는 법률사무종사 제도를 소관하는 주무 부처로서, 법률사무종사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법률사무종사기관 관련 변호사법 유권 해석,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지정취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21조의2, 동법 시행령 제2조).

## 2

## 법률사무종사기관 현황

- '21. 12. 기준 총 2,946개 기관이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중 법률사무소가 1,213개, 법무법인이 1251개로 전체의 8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현황	
법무법인	1251
법무법인(유한)	79
법률사무소	1213
주식회사	231
국가기관	42
국제법인	13
지방자치단체	13
기타기관(공공기관, 비영리법인, 특허법인 등)	104
합계	2946

-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현황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http://www.moj.go.kr)) ▶ 법무정책 서비스 ▶ 법무/검찰 ▶ 법무법인 ▶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법률사무종사 제도 근거 법률

변호사법

**제21조의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통산(通算)하여 6개월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이하 “법률사무종사 기관”이라 한다)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제6호에 한정한다)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 1명 이상이 재직하는 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에 한정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2.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3.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5. 국제기구, 국제법인, 국제기관 또는 국제단체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
6. 대한변호사협회

**제31조의2(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제50조제1항,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②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가 최초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1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 4

# 법률사무종사 변호사<sup>1</sup>가 알아야 할 내용

## 가. 법률사무종사를 시작하고자 할 때

### ● 법률사무종사의 대상

- 변호사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변호사, 즉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 변호사시험 합격 후 공익법무관·군법무관으로 복무한 경우 복무기간 중 변호사법상 법률사무에 종사하였음이 인정된다면 복무종료 후 별도의 법률사무 종사 의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법무부 유권해석 사례

Q. 변호사시험 합격 후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는 경우, 복무종료 후 별도로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의 근무가 필요한가요?

A.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익법무관은 ‘법률구조업무’와 ‘국가소송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법률구조공단 등에 배치되고, 검찰청 및 법률구조공단은 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이므로, 공익법무관이 배치된 기관에서 국가소송, 소송구조 업무 등 법률사무에 종사하였다면 공익법무관 복무종료 후 별도의 실무수습 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 통상 법률사무종사 중인 변호사를 ‘실무수습 변호사’라고 부르나,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변호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라 칭하기로 함.

## ● 법률사무증사기관의 종류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및 대한변호사 협회는 별도의 지정 신청이 없더라도 당연 법률사무증사기관으로 인정됩니다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
- 반면,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률사무소·합작법무법인, 국가 기관·지자체, 그 밖의 법인<sup>2</sup>·기관·단체는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곳 중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에 한정하여 법률사무증사기관으로 인정됩니다.
- 근무하고자 하는 기관이 법률사무증사기관으로 인정되는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 법률사무증사기관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법률사무증사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법무부 유권해석 사례

Q.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법무법인에 취업을 하였는데, 6개월이 지나 변호사 개업신고를 하려고 보니 제가 근무했던 법무법인이 법률사무증사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률사무증사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근무한 기관이 법률사무증사기관으로서의 지정요건을 갖춘 상태라고 하여도 법률사무증사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이상, 위 기관에서 근무한 것은 법률사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조직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예외로 인정). 이 경우 변호사 개업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을 법률사무증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해당 기관에서 다시 6개월 간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또는 이미 법률사무증사기관으로 지정된 다른 기관에서 6개월 간 법률사무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 ● 법률사무종사 기간의 기산점

- 당연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의 법률사무종사 : ①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 ② 법률사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날 중 뒤의 날
- 법무부장관의 지정을 필요로 하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의 법률사무종사 : ①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 ② 법률사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날, ③ 해당 기관의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일 중 가장 뒤의 날
- 법률사무종사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 이전의 기간 또는 해당 기관의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일 이전의 기간은 6개월의 법률사무종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무부 유권해석 사례

- Q.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법무법인에 취업을 하였는데, 취업한지 한 달이 지나서야 제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법률사무종사기관이 아닌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뒤늦게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처음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법률사무종사 기간을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나요?
- A.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후 법무법인 등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도중, 뒤늦게 해당 법무법인 등이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받은 날이 6개월 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됩니다.

## ● 법률사무종사 기간의 계산

### 변호사법 시행령

제5조의2(법률사무종사 또는 연수 기간의 합산)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법률 사무 종사 또는 연수 기간을 계산할 때 둘 이상의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종사 또는 연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 기간이 중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 둘 이상의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종사 또는 연수한 자의 경우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변호사법 시행령 제5조의2).
- 예컨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연수받던 중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6개월의 기간 중 대한변호사협회에서의 연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만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근무하면 됩니다.
- 또한,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법조경력 5년 이상 변호사의 재직’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될 수 있는데, 그 기관에서 근무하는 법률사무종사 변호사가 법률사무에 계속하여 종사하였다면 위 요건이 보충될 때까지의 기간도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봅니다(변호사법 제21조의 2 제7항 제2호).

## 나. 법률사무에 종사할 때

### ● 법률사무의 의미

- 변호사법상 법률사무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와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를 의미하며,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보전·명확화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위 행위와 관련된 행위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204 판결).

#### 법무부 유권해석 사례

- Q.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변호사들이 소속되지 않은 일반부서에서 법률검색 정도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법률사무종사로 인정될 수 있나요?
- A.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근무하더라도, 변호사들이 소속되지 않은 일반부서에서 법률사무 외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법률검색 정도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상 ‘법률사무’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변호사법 제21조의2에서 규정하는 법률사무종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무부 유권해석 사례

- Q.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변호사법상 유효한 법률사무종사 내지 연수가 가능한가요?
- A. 법률사무종사 내지 연수는 변호사 등록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등록 없이 법률사무종사 내지 연수를 마치더라도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다만,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를 마친 후에는 변호사 등록을 마치고 개업을 하여야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의 지위

-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실질적으로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채용되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협 유권해석 사례

#### Q. 법률사무종사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되나요?

- A.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채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서면 작성 등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근로관계가 사용종속관계라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률사무종사 기간 중 근로자의 지위(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지급, 4대보험 가입, 실무 수습 종료 후 고용관계 유지 등 고려)에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법무부의 유권해석은 대한변협의 유권해석과 다를 수 있음

-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4조 제3호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나, 명함에 변호사 문구를 기재하거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공고하는 등 대외적으로 변호사로 표시·기재하기 위하여는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 협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대한변협 유권해석 사례

**Q.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고 개업하지 않은 준회원 상태인 경우 대외적으로 변호사 표시를 할 수 있나요?**

A.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으므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고, 개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의 준회원이라 할지라도 변호사에 해당하므로 대외적으로 변호사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변호사 자격이 있음을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 변호사 업무를 제외한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명칭 표시가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변호사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변호사의 표시를 하여 다른 업무 수행이 법적으로 허용된다거나 다른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가진다는 등의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경우 품위유지의무(변호사법 제24조) 위반 또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변호사법 제23조) 등 변호사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 법무부의 유권해석은 대한변협의 유권해석과 다를 수 있음

### 대한변협 유권해석 사례

**Q. 법무법인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소속변호사로 채용 신고할 수 있나요?**

A.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은(변호사법 제 21조의2) 구성원이 아닌 소속변호사로 채용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법무법인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구성원이 아닌 소속변호사로 채용하고 채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와 소속변호사로 구성됨(변호사법 제45조, 제47조)

※ 법무부의 유권해석은 대한변협의 유권해석과 다를 수 있음

## ● 법률사무종사 변호사가 할 수 없는 행위

-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는 ①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될 수 없고(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② 사건을 수임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
- 이 때 금지되는 행위에는 변호사로서 개업 및 사건 수임 행위뿐 아니라, 개업을 전제로 하는 국선변호인 선정, 변호사 선임을 전제로 하는 변호인 접견·수사 기관 조사 참여·법원 제출 서류에 명의 표시 등의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 법무부 유권해석 사례

#### 1.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행위

- 법률사무종사기관 담당 변호사 명의 서면작성 보조 및 상담보조
- 변호인으로 선임된 경력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 접견

#### 2.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한 경우 허용되는 행위

- 법무법인 소속변호사로 영입공고문 게재, 홈페이지·외부간판에 변호사로 표시
- 변호사 직함 및 법률사무종사기관명이 명시되어 있는 명함 제작 및 배포

#### 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되지 않는 행위

- 수임계약 체결
- 소송대리 및 법정출석(사내변호사의 소속 기업 소송대리 포함)
- 소송복대리
- 수사기관 입회 및 조사 참여(담당변호사와 함께 수행도 불가)
- 변호사로서 단독 법률상담·본인명의 서면작성
- 법무법인 명의로 제출되는 서류에 명의 표시
- 국선변호인 선정
- 단독으로 변호인 접견 등

※ 다만, 단독사건에서의 법원의 허가(민사소송법 제88조), 업무집행사원(상법 제201조), 국가기관 직원의 소송수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등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가 아닌 자의 소송수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변호사의 지위가 아닌 각 규정에서 정한 지위에서 소송대리 가능(이 경우 변호사임을 표시할 수 없음)

### 대한변협 유권해석 사례

**Q. 실무수습 중인 변호사가 타 법률사무소의 변호사와 공동으로 구치소에서 접견을 할 수 있나요?**

A. 법률사무종사 제도 취지에 비추어 실무수습 중인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된 담당변호사와 함께 변호인 접견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담당변호사 없이 의뢰인이 선임한 다른 법률사무소·법무법인 등의 변호사와 함께 접견을 하는 것은 정당화 되지 않습니다.

※ 법무부의 유권해석은 대한변협의 유권해석과 다를 수 있음

## ● 근무형태

- 변호사법 제21조의2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의 ‘법률사무종사’ 및 대한변호사 협회의 ‘연수’ 외의 형태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파견 등 다른 형태의 근무는 변호사법상 법률사무종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편,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는 변호사로 개업한 것을 전제로 하는 변호사법상 겸직제한 규정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원 강사·영리 목적 법인의 사용인 등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겸직으로 인하여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의 사무를 소홀히 하는 등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실무능력 제고를 통한 국민권의 증진이라는 취지에 맞는 법률 사무종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변호사법상 유효한 법률사무종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 법무부 유권해석 사례

Q.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동일한 기관에서 변호사법상 법률사무종사 및 변리사법상 실무수습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유효한 법률사무종사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변호사의 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법률사무종사 제도와 변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변리사 실무수습 제도는 그 도입취지, 목적, 내용 등을 각 달리하고 있고 변호사와 변리사의 주된 업무 내용도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근무 중인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변리사 실무수습 현장연수를 동일한 기관에서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유효한 법률사무종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무부 유권해석 사례

Q. ①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기관에 취직한 후 업무협조 관계의 법무법인에서 주 1~2회 교육을 이수한 경우, ② 5년 이상 경력변호사와 함께 법률 사무종사기관이 아닌 법무법인으로 파견되어 근무한 경우 유효한 법률사무종사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① 업무협조 관계에 있는 법무법인에서의 교육 이수, ② 법률사무종사기관이 아닌 법무법인 등으로의 파견 근무 등은 변호사법에서 법률사무종사 및 연수 외의 형태를 인정하지 않는 점,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요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있어 유효한 법률사무종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법무부 유권해석 사례

Q.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률사무종사 중 학원 강사를 겸업할 수 있나요?

A. 변호사법상 법률사무종사 중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학원 강사를 겸업하는 것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는 않으나, 학원강사 겸업으로 임하여 실질적으로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의 사무에 충실하지 못하는 등 그 취지에 맞는 법률사무종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유효한 법률사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 법률사무종사를 마친 때

### ● 법률사무종사 확인서의 제출

#### 변호사법

제21조의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③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가 제1항에 따라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최초로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려면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제1항제6호의 연수는 제외한다)를 받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법률사무종사를 마친 변호사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근무한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종사 확인서(별첨1)를 받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변호사법 제21조의2 제3항).

5

## 법률사무종사기관이 알아야 할 내용

### 가.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

#### ●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요건

##### 변호사법 시행령

제2조(법무법인 등의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② 법무부장관은 지정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지정신청기관을 법 제2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1명 이상이 재직할 것. 이 경우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 중에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2.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를 제외한 변호사의 수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의 수 이상일 것
3. 소송에 관한 행위,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또는 일반 법률 사무를 주로 취급하는 부서 또는 담당자가 있을 것
4.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에 대한 관리를 담당할 변호사가 1명 이상 지정되어 있을 것
5. 사무실 공간 등 시설 여건이 법률사무 종사에 적합할 것

-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률사무소·합작법무법인 및 국가기관·지자체 등의 법인·기관·단체 등이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하여는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경력이 있는 자의 재직 외에도 변호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해석

### 법원조직법

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할 사람

-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변호사는 개업 후 5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를 의미하나, 제2호·제3호는 변호사의 자격만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변호사로 개업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 법무부 유권해석 사례

Q.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었던 자가 법인의 비상근 이사로 근무하는 경우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단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나요?

- A. 법인의 비상근 이사는 변호사시험 합격 변호사에 대한 효과적인 실무수습 지도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법인의 비상근 이사 외에 5년 이상의 경력변호사가 재직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단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 ● 법률사무증사기관 지정 신청 방법

### 변호사법 시행령

제2조(법무법인 등의 법률사무증사기관 지정) ① 「변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에 따른 법률사무증사기관(이하 "법률사무증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법률사무증사기관 지정신청서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붙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신청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인적사항
2. 제2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다는 취지
3.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변호사(이하 "법률사무증사 변호사"라 한다)를 위한 별도의 수련과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개요
-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법률사무증사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신청기관에 법률사무증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변호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증사기관 지정 신청서 및 첨부 서류(별첨2)를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법무과로 등기 발송

※ 이메일 : ① 법무부 홈페이지 ▶ 법무정책서비스 ▶ 법무/검찰 ▶ 법무법인 ▶ ‘법률사무증사기관 신청’에서 업무 담당자 이메일 주소 확인, ② 제반 신청 서류 전체를 컬러 스캔, ③ 1개의 파일로 첨부하여 업무 담당자 이메일 주소로 발송(단, 10MB 초과 시 분리)

### 첨부서류 목록

1.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2. 5년 이상 경력 변호사 및 소속변호사 목록(성명, 생년월일, 연수원 기수 또는 변호회수 등 표로 작성)
3. 시설 여건이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적합한지 증명하기 위한 사실확인서 및 시설 사진(4장 이상)
4. 실무수습 계획서

- 법무법인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는 별개의 독립된 법률사무종사기관입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은 주사무소·분사무소가 각각 개별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 지정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이 취소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변호사법 제21조의2 제7항 제1호).
- 요건 구비의 흠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상 서류 접수 후 2주일 이내 법무부장관 명의의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서(별첨3)가 발급됩니다.

### ●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서 재발급

- 지정서의 분실, 주소 변경, 명칭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반드시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재발급 신청서(별첨4)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발급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추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사무종사확인서 제출 시 다른 명칭·주소로 인해 6개월의 실무수습 기간이 인정되지 않거나, 법무부가 매년 실시하는 법률사무종사기관 운영 서면실태 조사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위 조사서 미제출을 사유로 개선·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된 개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가 법무법인을 설립하거나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한 경우, 기존의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새로 설립한 법무법인 또는 조직변경된 법무법인(유한)에 대하여 다시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변호사법상 법률사무소·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등은 별개의 기관임

### 법무부 유권해석 사례

Q.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된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한 경우, 새로이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을 받기 전까지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근무를 변호사법상 법률사무종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①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해당 법무법인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도중에 조직변경이 이루어졌고, ② 소재지·인적 구성원 등 동일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요건, 즉 통산하여 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1명 이상의 존재, 관리 담당 변호사의 존재 등의 요건을 그대로 갖추고 있어 법무법인이 처음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된 때로부터 실질적으로 그 취지에 맞는 법률사무종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상 법률사무종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법무부 유권해석 사례

Q. 자신의 개인 법률사무소가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던 변호사가 법무 법인을 설립하면서 법률사무소에 대한 기존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까지 취소 되었고 그 이후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설립된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경우, 새로이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변호사법상 법률사무종사료 인정받을 수 있나?

A. ①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현황이 공시되어 해당 법무법인이 법률사무종사기관 인지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점, ②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법률사무종사 전에 이미 개인 법률사무소에 대한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이 취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무법인이 새로이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법정 실무 수습 기간에 산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나. 법률사무종사기관을 운영할 때

### ●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에 대한 처우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29736 판결, 실습생, 견습생, 인턴 등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로서 노동법적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고용노동부, 2016).

- 위와 같은 법리는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종사 변호사가 법률사무종사기관의 대표변호사 등으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등 법률사무종사의 실질을 ‘교육’이 아닌 ‘근로’로 볼 수 있다면,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에게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무조건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가급적 대한변호사협회의 실무수습변호사 표준 근로계약서(별첨5), 실무수습 변호사의 지도 및 처우 가이드라인(별첨6) 등을 참고하여 적절한 급여 및 근로조건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만약,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의 지위를 악용한 무급 근로, 부당한 대우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무부의 개선·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률사무종사제도 취지에 따라 법률사무종사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실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실제 사건을 통한 실습 진행 등 적합한 실무수습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에 대한 교육(근로) 프로그램<sup>3</sup>

-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실제 사건을 통하여 법률사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강의 방식의 지도가 가능합니다.
- 각 기관이 수행하는 사건의 종류, 난이도, 범위 등이 다를 수 있으나, 각 기관은

3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연화 교수), 법률사무종사기관의 변호사실무수습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연구, 2019, 64면.



아래의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법률사무종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그에 따라 법률사무종사 변호사가 실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1 | 기본 프로그램

주제	교육 방식	주차	내용
오리엔테이션 및 변호사 자세	강의 및 토론	1	- 변호사의 사명 - 사건 및 고객을 대하는 태도 - 변호사로서의 목표 및 진로 - 변호사사무실의 운영
변호사 윤리	강의 및 토론	1	- 변호사법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한 논의 및 위반 형태별 주의점 - 대한변협 홈페이지 자료 이용
보전처분과 민사집행	강의지도	4	- 이론의 설명 - 실제 문건의 열람과 검토 - 검토의견서의 작성 - 실제 사건에의 참관
민사소송	실습지도	5	- 법률정보조사 교육 - 관계 법령 및 판례 리서치 - 의뢰인 상담 방법 - 의뢰인 상담 배석 및 참관 - 종료된 사건의 문건 검토의견서 및 관련 서류 작성(최소 3건) - 법정참관(최소 5회) - 진행되는 사건의 문건 검토의견서 및 관련 서류 초안 작성(최소 2건) - 조정 기법 및 주의사항

주제	교육 방식	주차	내용
가사소송	실습지도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정보조사 교육</li> <li>- 관계 법령 및 판례 리서치</li> <li>- 의뢰인 상담 방법</li> <li>- 의뢰인 상담 배석 및 참관</li> <li>- 종료된 사건의 문건 검토의견서 및 관련 서류 작성(최소 2건)</li> <li>- 법정참관(최소 1회)</li> <li>- 진행되는 사건의 문건 검토의견서 및 관련 서류 초안 작성(최소 1건)</li> </ul>
형사소송	실습지도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정보조사 교육</li> <li>- 관계 법령 및 판례 리서치</li> <li>- 의뢰인 상담 방법</li> <li>- 의뢰인 상담 배석 및 참관</li> <li>- 종료된 사건의 문건 검토의견서 및 관련 서류 작성(최소 2건)</li> <li>- 법정참관(최소 4회)</li> <li>- 진행되는 사건의 문건 검토의견서 및 관련 서류 초안 작성(최소 2건)</li> </ul>
행정소송	실습지도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료된 사건의 문건 검토의견서 및 관련 서류 작성(최소 2건)</li> <li>- 법정참관(최소 1회)</li> <li>- 진행되는 사건의 문건 검토의견서 및 관련 서류 초안 작성(최소 1건)</li> </ul>
회사소송	실습지도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료된 사건의 문건 검토의견서 및 관련 서류 작성(최소 3건)</li> <li>- 법정 참관(최소 2회)</li> <li>- 진행되는 사건의 문건 검토의견서 및 관련 서류 초안 작성(최소 2건)</li> </ul>

주제	교육 방식	주차	내용
의견서 작성	강의지도	3	- 효과적 서면 작성 요령 - 관계 법령 및 판례 리서치 - 제반 법률질의에 대한 검토 방법 강의 - 문건 작성(최소 6건)
회사실무	강의지도	2	-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요령 - 약관 제정 및 개정 검토 - 공정거래 이슈 체크 및 대응 - 준법감시제도 - 감사업무

## 2 | 대체 프로그램(1) - 의료소송 전문 법률사무소의 경우

주제	교육 방식	주차	내용
오리엔테이션 및 변호사 자세	강의 및 토론	1	- 변호사의 사명 - 사건 및 고객을 대하는 태도 - 변호사로서의 목표 및 진로 - 변호사사무실의 운영
변호사 윤리	강의 및 토론	1	- 변호사법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한 논의 및 위반 형태별 주의점 - 대한변협 홈페이지 자료 이용
의료소송 특강	강의지도	4	- 의료소송의 특수성 - 의료과실과 인과관계의 검토 - 설명의무의 이해 - 의료법 강의 - 진료기록의 이해

주제	교육 방식	주차	내용
의료민사소송	실습지도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정보조사 교육</li> <li>- 관계 법령 및 판례 리서치</li> <li>- 의학 자료 조사보고서 작성</li> <li>- 의뢰인 상담 방법</li> <li>- 의뢰인 상담 배석 및 참관</li> <li>- 종료된 사건의 문건 검토의견서 및 관련 서류 작성(최소 6건)</li> <li>- 법정참관(최소 3회)</li> <li>- 진행되는 사건의 문건 검토의견서 및 관련 서류 초안 작성(최소 6건)</li> <li>- 조정 기법 및 주의사항</li> </ul>
의료형사소송	실습지도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정보조사 교육</li> <li>- 관계 법령 및 판례 리서치</li> <li>- 의학 자료 조사보고서 작성</li> <li>- 의뢰인 상담 방법</li> <li>- 의뢰인 상담 배석 및 참관</li> <li>- 종료된 사건의 문건 검토의견서 및 관련 서류 작성(최소 4건)</li> <li>- 법정참관(최소 3회)</li> <li>- 진행되는 사건의 문건 검토의견서 및 관련 서류 초안 작성(최소 4건)</li> </ul>
의료행정소송	실습지도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료된 사건의 문건 검토의견서 및 관련 서류 작성(최소 2건)</li> <li>- 법정참관(최소 1회)</li> <li>- 진행되는 사건의 문건 검토의견서 및 관련 서류 초안 작성(최소 1건)</li> </ul>
의견서 작성	강의지도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효과적 서면 작성 요령</li> <li>- 관계 법령 및 판례 리서치</li> <li>- 제반 법률질의에 대한 검토 방법 강의</li> <li>- 문건 작성(최소 6건)</li> </ul>

주제	교육 방식	주차	내용
내부 회의 참가	강의지도	1	- 내부 회의 참가를 통한 선배 변호사 와의 대화 및 최근 이슈 분석

### 3 | 대체 프로그램(2) - 기업 사내변호사의 경우

주제	교육 방식	주차	내용
오리엔테이션 및 변호사 자세	강의 및 토론	1	- 변호사의 사명 - 사내 변호사로서 역할과 자세 및 업무를 담당하는 태도
변호사 윤리	강의 및 토론	1	- 사내변호사 관련 규정의 소개 - 변호사법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한 논의 및 위반 형태별 주의점 - 대한변협 홈페이지 자료 이용
회사업무 소개	강의지도	2	- 회사 소개 - 소속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 - 현업부서와의 회의 배석
계약 검토	실습지도	5	- 법률정보조사 교육 - 관계 법령 및 판례 리서치 - 표준계약서 내용 숙지 - 기완성된 계약서를 토대로 한 검토 의견서 및 관련 서류 작성(최소 6건) - 진행되는 사건의 문건 검토의견서 및 계약서 등 관련 서류 초안 작성 (최소 4건)

주제	교육 방식	주차	내용
기업(자문)업무	실습지도	6	- 사내 자문업무의 이해 - 노무업무의 이해 - 각 부서 업무 관련 법률 검토 및 지원 - 자문의견서의 작성(최소 4건) - 각 부서와의 회의 시 배석(최소 2회) - 주주총회 및 이사회 운영 지원 업무 숙지 - 외부 공공기관 관련 업무의 이해
소송수행 및 관리	실습지도	5	- 관계 법령 및 판례 리서치 - 외부 법무법인 등에 대한 위임 관련 업무의 이해 및 회의 시 배석 - 종료된 소송의 의견서 및 관련 서류 작성(최소 4건) - 법정참관(최소 2회) - 진행되는 사건의 문건 검토의견서 및 관련 서류 초안 작성(최소 2건)
컴플라이언스	강의지도	4	-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교육 -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교육 - 준법지원인, 자율준수관리자 지정 등 관련 업무 소개 - 감사업무 소개

### ● 법률사무종사 확인서의 발급

- 법률사무종사기관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해당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법률사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법률사무종사 확인서(별첨1)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 ● 법무부의 관리·감독

### 변호사법

제21조의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⑤ 법무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법률사무종사기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종사 현황 등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원활한 법률사무 종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선 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⑦ 법무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법률사무종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 단서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가 법률사무에 계속하여 종사한 경우 보충될 때까지의 기간은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3. 거짓으로 제3항의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4. 제5항의 개선 또는 시정 명령을 통산하여 3회 이상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법무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법률사무종사기관에 대한 서면·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의 원활한 법률사무 종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은 개선·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표적으로, '5년 이상 경력 변호사'가 없는 기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후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를 한 차례도 선발하지 않은 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의 주당 출근일수가 3일 미만인 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가 근로를 제공함에 명백함에도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하는 기관 등은 개선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법률사무종사기관 운영 시 주의사항

-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①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단서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② 거짓으로 법률사무종사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③ 법무부장관의 개선·시정명령을 통산하여 3회 이상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변호사법 제21조의2 제7항) 법률사무종사기관 운영 시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다.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

### ●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취소 신청

- 사무소의 폐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취소 신청서(별첨8)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정 취소 시에는 반드시 기존 지정서 원본을 법무부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별첨1** 법률사무증사 확인서 양식

법률사무증사 확인서				
증사자	①성 명	한 글		②
		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인 적	② 주 소			
사 항	④ 증 사 기 관		증사기관 연락처	
	⑤ 증 사 기 간	예) 2020. 6. 22. ~ 2020. 10. 13. (3개월 22일)		

위 사람은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3항에 따라 우리 법률사무증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증사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법률사무소  
대표(이사) ○○○ (인)

대한변호사협회장 귀하

※ 첨부서류 : 법률사무증사기관 지정서(법무부 발급) 사본 1부.

## 별첨2 법률사무증사기관 지정신청서 양식

법률사무증사기관 지정신청서			
신청 기관	① 기 관 명	예) 법무법인 ○○○ 주 사무소(또는 수원분사무소)	
	② 주 소		
	③ 대표자 성명		④ 기 관 전 화
지 정 요 건	⑤ 5년 이상 경력 변호사 성명		
	⑥ 소속 변호사 수		
	⑦ 법률사무 담당부서·담당자		
	⑧ 관리담당 변호사 성명 (기관메일)		
	⑨ 1인당 전용면적 등 시설 여건	※ 별도 (작성) 첨부	
⑩ 실무수습 계획서	※ 별도 (작성) 첨부		

「변호사법」 제21조의2 및 「변호사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률사무증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예) (법무법인) 법무법인 대한민국 (법인직인)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변호사 ○○○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날인)  
 (기타) 대표 서명(또는 기명) 날인

법무부장관 귀하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 2. 5년 이상 경력 변호사 및 소속 변호사 명단 3. 시설 여건이 법률사무 증사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4. 법률사무증사자 실무수습 계획서
------------------	---

## ■ 각 항의 기재요령

- ① “기관명” :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 등’) 및 변호사 사무소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에 신고된 명칭을, 그 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법인명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를 의미
- 지방행정기관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을 부기
  - 법무법인의 경우 지정받고자 하는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반드시 구분·표기하고, 각각 별개로 신청
    - ※ 분사무소가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⑤번 요건 등을 모두 갖추어 주사무소와 별도로 신청
  - 종합법률사무소(별산제)의 경우 ‘대한변협에 등록된 명의로 신청하되,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명의를 부기
- ② “주소” : 법무법인 등 및 변호사 사무소의 경우 변협에 신고된 주소를, 그 외의 경우 실주소를 의미(다수의 사무실일 경우 실제 재직변호사의 기관 주소지)
- ③ “대표자” : 법무법인 등은 지방변호사회에 신고된 대표 구성원의 성명을, 그 이외의 경우에는 기관을 대표할 자의 성명을 의미
- ④ “전화번호” : 기관(또는 관리담당 변호사)의 연락처를 의미
- ⑤ “5년 이상 경력 변호사” : 수인이 있는 경우 대표되는 1인의 성명을 표시
- 5년 이상 경력 변호사 및 소속변호사 명단 1부 : 성명·생년월일·사법연수원 기수(변호사시험 합격 횟수)·비고(5년 이상 경력여부 표기) 순으로 작성하고, 5년 이상 경력변호사의 경력 자료 및 신청기관의 재직 변호사(구성원 및 소속변호사) 모두의 ‘변호사등록증명원’ 첨부

※ 경력 자료 : 법무법인 등 근무 경력의 경우 변호사 등록(상세현황) 증명원, 그 외 국가기관 등 근무 경력인 경우 해당기관 경력(또는 재직) 증명서

▶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경우 : 5년 경력자료 첨부 시 ‘법률사무종사 확인서’ 또는 ‘연수 확인서’(변협 발행) 추가

- ⑥ “소속 변호사 수” : 법무법인 등의 경우,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변호사 모두를 포함함
- ⑦ “법률사무 담당부서·담당자” : 대표 혹은 관리담당 변호사 기재 무방
  - 법률사무 이외 다른 업무를 함께 수행하더라도 법률사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경우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로 기재할 수 있음.
- ⑧ “관리담당 변호사” : 수인이 있는 경우 그 중 대표되는 1인의 성명(또는 기관명)·이메일 주소를 기재
  -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의 관리 이외 다른 업무를 함께 수행하더라도 관리담당 변호사로 기재할 수 있음
- ⑨ “1인당 전용면적 등 시설 여건” : 1인당 전용면적은 예시적인 것으로 그에 한하지 않고,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률사무에 종사하기에 적절한 시설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기재
  - 시설 여건이 법률사무 종사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 수습예정 변호사의 독립적인 사무공간(책상, 컴퓨터 집기 등) 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기관대표자 작성의 사실확인서(A4지 1매)와 법률 사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컴퓨터 등 집기가 갖추어진 사무공간(책상 등) 및 이를 포함한 사무소 내부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

- 상호가 포함된 사진 등 컬러사진 4장(A4지 1매당 사진 2컷)을 의미
- ⑩ “실무수습 계획서” : 실무수습계획서의 양식은 별도로 없으며, 수습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을 작성 후 기관대표가 서명(또는 기명) 날인하여 제출(매수 제한 없음)

### ■ 첨부서류 기재요령

1.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제출
  - \* (법무법인 분사무소 신청일 경우 :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모두 제출)
2. ‘5년 이상 경력변호사 및 소속변호사 명단’ 작성
  - 성명·주민번호·기수(또는 횟수) 표시)·비고(5년 경력유무 표시)제출 : A4지에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 기관에 상주하는 재직변호사 모두 기재  
신청하는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에 실제 재직하는 변호사 명단 기재
- 2-1. 5년 이상 변호사의 ‘법률사무 종사’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 반드시 제출
  - 변호사등록(상세현황) 증명원 상 개업일 기준(휴업기간 제외)으로 경력을 기산하므로 ‘변호사등록증명원’ 및 ‘변호사등록(상세현황) 증명원’
  - 수습기간도 5년 경력에 포함하므로 ‘법률사무종사 확인서’ 또는 ‘(변협 발부) 연수 확인서’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한 경우 ‘법률사무 종사(법무팀 근무 등)’를 나타내는 재직(경력) 증명서

※ 기관에 상주 재직하는 모든 변호사는 '변호사등록증명원'을 제출하고, 5년 이상 경력변호사는 이에 더하여 '변호사등록(상세현황) 증명원'을 제출

3. 시설 여건이 법률사무 종사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귀 사무소의 단위면적 넓이를 묻는 것이 아니라) 재직변호사의 사무 공간과는 별도로, 수습 변호사가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책상 및 컴퓨터 등 집기류 확보)이 독립적으로 확보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서류로서가. 먼저 대표 명의 작성의 '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하시고 (직인 필)

\* 분사무소 신청일 경우 - 분사무소 대표가 '사실확인서' 작성

나. 또한 수습 변호사가 사용할 컴퓨터 등 집기가 확보된 책상 사진 1매 이상과 이 부분이 포함된 전체 사무실 전경 1매 이상, 상호가 포함된 사무실 사진 1매(분사무소는 분사무소임을 표시) 이상 등 총 4매 이상의 사진을 A4지 1장에 사진 2매가 각각 들어갈 수 있도록 작성 (칼라 必)하여 제출

4. 실무수습 계획서는 반드시 대표 명의(직인 필) 작성·제출

\*분사무소 신청일 경우 - 분사무소 대표 명의 실무수습 계획서 작성

- 실무수습 계획서의 양식은 별도로 없으며, 수습예정 변호사에 대한 수습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매수 제한 없음)

■ 필요 시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 법무부 법무과 02)2110-3500

별첨3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서 양식

제0000호

# 지정서

명 칭 : 법무법인 00 (주사무소)

소재지 : 00시 00로 00, 0층

변호사법 제21조의2에 의하여 위 기관을 법률  
사무 종사기관으로 지정함

20 년 월 일

법무부장관 직인

**별첨4** 법률사무증사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양식

법률사무증사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신청 기관	① 기 관 명			
	② 주 소	우편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전 화 번 호	
지 정 요 건	⑤ 5년 이상 경력 변호사			
	⑥ 소속 변호사 수			
	⑦ 법률사무 담당부서·담당자			
	⑧ 관리담당 변호사(이메일)			
	⑨ 법률사무증사기관 지정번호	예) 1357(지정일 2014. 9. 17.)		
⑩ 사 유	분실( ) 주소변경( ) 명칭변경( ) 기타( )			

○○○등의 사유로 법률사무증사기관의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무부장관 귀하

비	
고	



## 별첨5 실무수습 변호사 표준 근로계약서

### 실무수습 변호사 표준 근로계약서<sup>4</sup>

법무법인 명칭 또는 법률사무소의 채용변호사 성명(이하 “갑”이라 한다)과 채용된 변호사 성명(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실무수습 근로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한다.

제1조 (실무수습 근로계약의 체결) ① 이 계약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갑은 을을 실무수습 변호사로 채용하고, 을은 갑에게 실무수습 변호사로서의 직무 (변호사 법상 제약이 있는 업무 외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갑과 을은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가 마련된 취지에 따라 변호사 업무를 성실히 지도하고, 배우기로 한다.

② 을은 갑의 소재지 사무소에서 근무한다. 다만, 갑은 업무수행상의 목적에 따라 을을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조 (실무수습기간 및 수습확인서 발급 의무) 이 계약에 따른 갑과 을 사이의 실무수습 기간은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실무수습기간 종료 (기간 만료, 계약 해지 등 여타의 실질적인 수습기간) 후, 갑은 을에게 법률사무 종사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조 (임금) ① 을의 월 급여는 \_\_\_\_\_원(세전)이고, 갑은 을에게 법령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월 급여는 당해 최저임금을 하한으로 한다.

② 갑은 을에게 월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_\_\_\_일에 을이 지정한 을

4 대한변호사협회 작성·배부(2018. 2. 13.)

명의의 제좌로 지급한다. 다만, 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의 마지막 평일에 지급한다.

③ 월 통상임금 기준시간 수는 209시간으로 한다.

④ 을이 위 제3항의 기준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한 때에는 갑은 을에게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제4조 (근로시간, 휴게, 휴일) ① 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되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매주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③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제5조 (연차유급휴가) ① 갑은 을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갑은 을과 실무수습 근로계약의 종결과 함께,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그 실무수습 기간을 연차유급휴가 산정시의 근속기간으로 합산하여 반영하기로 한다.

제6조 (근속기간의 합산) 갑은 을과 실무수습 근로계약의 종결과 함께,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실무수습 기간을 퇴직급여 산정시의 근속기간으로 합산하여 반영하기로 한다.

제7조 (실무수습기간 중 본 계약 해지의 예고와 서면통지) ① 갑은 을과 본 계약을 해지(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지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 및 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



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갑이 을과 본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사유와 해지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실무수습기간 만료 전 채용여부 통지) 갑은 을에게 실무수습기간 만료 30일 전에 채용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갑 명칭·성명 (인)  
대 표 자  
주 소

을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 별첨6 실무수습 변호사 지도 및 처우 가이드

### 수습변호사 지도 및 처우 가이드<sup>5</sup>

변호사시험 합격 변호사들은 6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실무를 익히고 선배 변호사로부터 법정 예절에서부터 변호사 윤리까지 바른 변호사의 길을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최근 실무수습 제도를 악용하여 수습변호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실무수습변호사에게 수습지도관 변호사가 지켜야 할 필요최소의 처우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 1. 수습제도의 목적(수습변호사와 수습지도관의 의무)

변호사 수습제도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변호사로서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첫 발을 내딛는 신규 변호사들에게 변호사 업무 실례를 경험하게 하고, 변호사 윤리를 몸에 익히게 하는데 있습니다. 수습변호사들은 위와 같은 수습 목적에 따라 수습기간 동안 성실히 실무를 익혀야 하고, 수습지도관 변호사들은 신규 변호사들에게 다양한 업무 양태를 경험하고 앞으로 맡을 법률사무에 있어 변호사 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2. 수습기간 동안 수습교육 내용

변호사 수습제도는 변호사가 진행하는 법률사무에 대하여 기본적인 실례를 익히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종사기관(사무실)의 여건이 허여하는 한 다양한

5 대한변호사협회 작성·배부(2018. 2. 13.)

분야의 소송, 집행, 상담, 접견에 대하여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송무분야에서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이미 진행되어 종결된 사건의 기록에 대한 검토보고서나 의견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이나 실제 진행되는 사건에 수습지도관과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상담, 접견, 서면작성지도, 해당 재판 참관 기회를 주어 사건 전반 진행 절차를 익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집행과 보전소송 등의 절차를 보고, 배우는 기회나, 해당 사무실의 특성화 된 전문분야(지적재산권, 파산 등)에 대한 교육도 좋은 수습교육 방법이 될 것입니다.

변호사가 습득해야 할 기본적인 법률실무를 도외시키고 법률종사기관의 필요에 따라 특정 사건과 업무에만 치중하게 하는 것은 수습제도의 목적과 맞지 않으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이에 변협에서 또는 각 수습기관에서 기본적인 수습계획서 등을 작성하고, 각 수습기관마다 그 계획서에 적시된 항목 중 수습기간 중 실시한 수습 사무에 관하여 체크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대한변협에서 표준화된 수습계획서 표준안을 제시하고 각 수습기관은 자신들의 업무 성격에 맞는 부분만을 체크하여, 체크된 부분 만이라도 수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고 있습니다).

### 3. 수습기간 동안 처우

수습변호사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종사기관은 수습변호사를 변호사와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습변호사는 현행법 하에서 개업변호사 또는 변호사회 정회원의 자격을 성취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사건 단독 선임, 사건 선임을 전제로 한 단독 상담과 접견이 허용되지 않을 뿐입니다.

### 가. 급여, 수습기간, 수습업무강도

현행법 하에서 수습기간 종료 후 고용이 확정되어 이에 대한 포괄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이상, 수습변호사는 수습교육을 받는 신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의 수습기간과 실질적 근로를 감안한다면 반드시 수습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에 피치 못해 야근이나 주말근무를 하게 될 경우 수습변호사에게 그에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처우를 해야 합니다.

법률종사기관이 수습교육기간 동안 과도한 업무를 처리하게 하면서도, 정식 고용된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강도의 업무처리 결과를 요구하거나, 야근 등을 요구하면서 최저시급도 안 되는 급여를 지급하거나, 그마저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법률종사기관의 업무를 처리해 보는 경험을 갖는 것은 수습제도목적에 부합하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습교육자라는 점에서 수습을 통한 업무에 대한 대가는 적절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 나. 수습변호사에 대한 업무지시의 성격

수습변호사는 법률사무에 대한 실무를 배우기 위해 수습기간을 거칩니다. 그런데 법률사무의 업무는 그 범위가 모호하여 지나치게 확장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를들어 수습지도관의 칼럼, 논문, 저서를 대필하게 하거나, 지도관의 가족이 써야 할 신문 기고글을 대신 쓰게 하는 업무지시는 그것이 아무리 법률이나 법률 문제에 대한 주제라 할지라도 해서는 안되는 업무지시에 해당합니다.

또한 수습변호사에게 재판 운전을 전담하게 하거나, 지방재판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출장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한 업무지시에 해당합니다.

#### 다. 여성 수습변호사에 대한 처우

우리사회는 여성에 대해서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법을 다루는 변호사 사회는 더 앞장서서 이를 보장하고 장려하는 문화를 선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회전문변호사 등 매우 낫 뜨거운 사례들이 일어났고, 특히 이 과정에서 여성 수습변호사들에 대한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굳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시한 ‘고용변호사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지 않더라도 여성 변호사에 대해 지켜주어야 할 예의와 필요적 처우가 배려되어야 합니다.

#### 라. 수습장소

업무 장소는 매우 민감한 부분으로 명확하게 해야 하고, 만약 업무수행상의 목적에 따라 수습변호사를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게 할 경우 수습변호사에게 미리 통지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 마. 기타

‘수습제도의 목적에 맞는 교육목적을 가진 업무지시 및 업무강도’와 근로시간에 대해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을 수준의 수습기간급여지급은 반드시 필요 합니다. 십여 명의 수습변호사를 선발하고, 이들을 서로 경쟁시켜 좋은 서면을

작성한 수습변호사에게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6개월 동안 조작된 ‘자발성’을 조작하고도, 수습기간 종료 후 한 명을 고용하거나 심지어 고용을 하지 않는 수습기관의 행태가 보고된 바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 4. 수습변호사 처우 가이드라인의 핵심

이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수습변호사’를 ‘변호사 답게’ 처우하라는 것입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습변호사’들이 변호사 업무를 하기에 앞서 경험이 많은 선배 변호사들에게 기본적인 소양을 배우기 위해 수습기간을 거칩니다. 이러한 수습제도가 악용되거나 신규 변호사들의 처우에 오히려 악영향을 준다면 폐지되거나 대폭 개선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막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게 된 수습변호사들은 선배 변호사를 통해 변호사 사회와 비전을 조망하게 됩니다. 수습지도관 변호사들이 처음 변호사 업무를, 또는 법조 생활을 시작한 그 때를 기억하며 수습변호사들을 바른 길로,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애정을 갖고 처우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변호사사회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 수습변호사 지도 및 처우 가이드

1. 수습제도의 목적은 신규 변호사들이 변호사 업무 실례를 경험하게 하고, 변호사 윤리를 몸에 익히게 하는데 있습니다.
2. 수습지도관은 신규 변호사들이 다양한 업무 양태를 경험하고 앞으로 맡을 법률사무에 있어 변호사 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수습교육은 변호사가 진행하는 법률사무에 대하여 기본적인 실례를 익히는데 있으므로 수습종사기관(사무실)의 여건이 허여하는 한 다양한 분야의 소송, 집행, 상담, 접견에 대하여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4. 6개월의 짧지 않은 수습기간과 실질적 근로를 감안하여 반드시 수습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무수습변호사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5. 수습기간에는 법령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월 급여는 당해 최저임금을 하한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통상임금 기준 시간인 209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6. 수습변호사에게 개인적인 업무지시나 변호사의 업무가 아닌 부적절한 업무지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7. 여성 수습변호사에 지켜주어야 할 예의와 필요적 처우가 배려되어야 합니다.
8. 수습장소는 명확하게 해야 하고, 만약 업무수행상의 목적에 따라 수습변호사를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게 할 경우 수습변호사에게 미리 통지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9. 많은 수의 수습변호사를 선발하고, 그 중 채용은 극소수를 하는 방식의 비인간적인 경쟁 유발행위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10. 수습기관의 수습변호사에 대한 교육은 우리 변호사사회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수습지도관은 ‘수습변호사’를 ‘변호사답게’ 처우하고 애정을 가지고 지도하여 바른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이끔 책임이 있습니다.

## 별첨7 올바른 법률사무종사제도 정착을 위한 안내문

### 올바른 법률사무종사제도 정착을 위한 안내문<sup>6</sup>

코로나19 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규 변호사의 실무수습에 힘써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변호사시험 합격한 신규 변호사들은 의무적으로 6개월 동안 법률사무종사 기관에서 종사하거나 협회 연수를 마쳐야 합니다. 법률사무종사제도의 도입 취지는 그동안 습득한 학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선배 변호사로부터 변호사로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전문지식과 실무 전반을 배워 바른 변호사의 길을 익힐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나 최근 법률사무종사제도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올바른 법률사무종사제도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1. 수습교육 내용

변호사 수습제도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변호사로서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첫 발을 내딛는 신규 변호사들에게 변호사 업무 실례를 경험하게 하고, 변호사 윤리를 몸에 익히게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 중인 변호사에게 개인적인 심부름, 단순 업무, 불성실한 지도 등은 지양하여 주시고, 수습교육의 내용이 제도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6 대한변호사협회 작성(2021. 12)

## 2. 급여, 수습시간, 수습업무강도

통설과 판례는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는바, 수습 변호사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임금 및 연장근로 수당 지급, 근로시간 및 휴일, 직장내 괴롭힘 금지 등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위반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3. 법률사무종사확인서 부정발급 등

수습 변호사의 법률사무종사제에 따라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발급하는 법률사무종사확인서는 법률사무사종사제도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법 제113조 제2호 참조

수습 지도관 변호사들이 처음 변호사 업무를, 또는 법조 생활을 시작한 그 때를 기억하며 수습 변호사들을 바른 길로,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애정을 갖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변호사 실무수습에 힘써 주시는 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별첨8** 법률사무증사기관 지정 취소 신청서 양식

법률사무증사기관 지정 취소 신청서			
신청 기관	① 기 관 명		
	② 주 소	변경시) 기존의 신청 주소로 기재	
	③ 대표자 성명	④ 지정 번호	예) 1357 (지정일 2014. 9. 17.)
	⑤ 전 화 번 호		

\* 취소 사유

예) 법률사무소에서 법무법인으로 변경, 법무법인을 법무법인(유한)으로 변경, 사무소의 폐쇄, 실무수습을 진행할 여건이 되지 않음 등

위와 같은 사유로 법률사무증사기관의 지정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무부장관 귀하

비	
고	

---

## 법률사무종사 가이드라인

---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 법무부 법무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전화 02) 2110-3178  
팩스 02) 2110-0324  
**협조** 대한변호사협회 연수팀  
**디자인** 동광문화사 02) 503-5165

